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87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 박상혁·강준현·김윤덕

김정호 • 박재호 • 서삼석

오영환 • 윤후덕 • 이동주

임오경 · 최인호 · 허 영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 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신도시 개발,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교통유발 효과가 큰 각종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도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어 이를 수행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인정 기준, 자격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3 신설).
-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 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2 신설).
- 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보급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의 업무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을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1호) 본문 중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 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 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 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외에"를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도급받은"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 링으로 정한다.
-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 거나 받지 아니할 것

제29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를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3장에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 사하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에 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 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 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인정의 기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 3.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4.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5.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 한 경우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7.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 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 ② 사업자, 승인관청의 장 및 교통영향평가심의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의 기준, 처분절차, 처분내용 공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반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 및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하였을 때
 - 3.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4. 제3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였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2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④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1조제3항 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를 "제52조제 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업무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업무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교통영향평가 업무실적을 관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실적 보고・관리・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의 제목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성"을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으로, "그와"를 "교통영향평가에"로,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를 "수집하여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제27조제1 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등록 및 보존 등을 위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등과 관련된 정 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3조의2(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 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업무기관"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내용의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업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업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내용의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취소
 -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의 취소
-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를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사업자
-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 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업자
- 6.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 7.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 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

통영향평가의 실시 · 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2.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 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 3.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정지기간 중에 새로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제6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 통영향평가서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 5.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자는 제51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교통영향평가 수행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에 필요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의 업무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
	어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
	은 사람을 말한다.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
행자의 준수사항) ① <u>사업자 및</u>	행자의 준수사항) ① <u>사업자는</u>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u>행하면서</u>
1.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	<u>4.</u>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
<u>터베이스</u> 에 등록할 것. 다만,	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	
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	
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2.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 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 품 ·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신 설>

<신 설>

-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 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제32조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 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 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 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 영향평가서 · 이행의무사항 확 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 가서 등"이라 한다)를 거짓으 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
- ② ----- 교통 영향평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면
- 1.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 1.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

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 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 2. (생략)
-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생략)

<신 설>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 (생 략)

- 1. ~ 6. (생 략)
- 7.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7.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생략)
- ② (생략)

<신 설>

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	니할 것	. 다만, 거	짓 또는 부
실	작성의	구체적인	. 판단기준
0	국토교	통부렁으:	로 정한다.

- 2. (현행과 같음)
- 3. 교통영향평가 -----
 - 4. (현행과 같음)
-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 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 업무 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 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 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 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인정의 기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인

<신 설>

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이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 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 3.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훈 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4.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5.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7.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 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 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 ② 사업자, 승인관청의 장 및 교통영향평가심의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의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 경력 등에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의기준, 처분절차, 처분내용 공개,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반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교육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 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 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 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의 지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 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 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 서는 아니 된다.
- (5)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건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

<신 설>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업무를 하였을 때
- 3.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4. 제3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였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2 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교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 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 설>

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 다.

④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될 수 없다.

자료 연구·조사 등) ①·② 자료 연구·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 고.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 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 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 향평가대행자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업무실 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 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업무실적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교통영향평가 업무실적 제52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 문인력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 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 을 관리·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업무실적 보고·관리· 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교통영향평가에---------수집하여 보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제27 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서등의 등록 및 보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이 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2(보고・검사 등)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 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

야 한다.

하는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내용의 보고 또는 관 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 평가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업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 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업무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내용의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 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취소

- (생 략)
 -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 <삭 제>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 2. 삭 제
 - 3.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 <삭 제> 른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료의 제 공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 납
 - ③ ④ (생 략)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8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1의2. (생략)

-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의 취소
-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1. · 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생략) <신설>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5. ------여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교통영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으로 또는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 설>

<신 설>

<u>5.</u> (생 략) <신 설>

- 1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사업자
- 2. · 3. (현행과 같음)
-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 통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부 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 사한 사업자
- <u>5.</u> --------<u>교통영향평가서 등을 거짓</u> <u>으로 또는 부실하게</u>-----
- 6.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 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 7.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u>8.</u> (현행 제5호와 같음)
-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 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

 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

 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자

<신 설>

-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 1. 2. (생략)

부당한 청탁	이나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교통	영향평
<u>가대행자</u>			

- ② -----------
-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 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 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2.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 하고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 행한 자
- 3.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정지기간 중에 새로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제60조(과태료)	(1)

1. ·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 | <삭 제> 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 시 · 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4. (생략)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 3. (현행 제4호와 같음)
-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 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 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 통부렁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 5.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업무실적을 보고하 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 자
- 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삭 제>

2.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	<u><</u> 삭 제>
여 자료를 등록 또는 보존하	
지 아니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